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39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이기현 · 김남근 · 박해철
윤건영 · 조계원 · 권향엽
김 윤 · 윤종균 · 임오경
김교홍 · 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법률 본문에서 직접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위임 구조는 법률상 권한자와 실제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주체가 법률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폐업 신고 불이행이 빈번하여 관련 통계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관한 실태조

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폐업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행정예연계하는 근거가 없어 통계 반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법률상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폐업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확인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나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실제 업무 수행과 법적 권한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41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한다.

법률 제2167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과 8항을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⑦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은 제1항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인지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가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6조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67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p> <p>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 ③ (생략)</p> <p>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법률 제2167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p> <p>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p> <p>-----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도지사</u>는----- ----- ----- ----- ----- ----- ----- ----- -----.</p>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 ⑦ (생략)

제31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도지사가-----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

-----시·도지사에게
-----.

② 시·도지사는-----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 재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신 설>

<신 설>

④ 시·도지사는

-----.

⑤ 시·도지사가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은 제1항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인지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가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2항을 준용한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 ④ (생략)

제34조(과징금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과징금 부과) ① 시·도지사는-----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생략)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② 시·도지사는-----

-----.

③ 시·도지사는-----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청문) 시·도지사는-----

-----.

제4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문화체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